

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1. 3. 2
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1년 2월 17일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1년 2월 22일
- 다. 상정일자 : 제159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(2011년 3월 2일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- 제안설명자 : 지역경제과장 이명성

가. 개정이유

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신용보증추천 대상자에 대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없이 신용보증서 발급기관 사전심사만으로 추천서를 발급하여 신청자의 대기시간을 단축시켜 자금을 지원함으로서 고객만족도를 제고하는 등 기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제출된 것임

나. 주요개정 내용

- (1) 안 제3조의2에서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
- (2) 안 제7조 제1항 제3호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보증추천대상자에 한해 심의회 의결없이 신용보증서 발급기관의 사전심사만으로 추천서를 발급하고자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심의회 심의 항목 중 특별신용보증 추천대상자 선정 항목을 삭제
- (3) 안 제11조의2에서는 감사담당관에서 부패영향 자율평가 검토 결과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계획공고를 조례에 명시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응자계획의 공고 조항을 신설
- (4)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관련조항을 정비

3. 검토보고 (전문위원 명금길)

-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설치·운용중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경영인들이 필요한 때 적기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요식적인 절차를 과감하게 생략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함으로서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또한 상위법에 맞게 규정된 기금의 존속기한에 대한 조항을

신설하였고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 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」 제13조(기금의 존속기한),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3조 제2항(정부의 책무) 등 상위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법제 사무처리규칙」 제6조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5. 토론요지 : 없음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8. 기타사항 : 없음